

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6. 24. ~ 2026. 7. 8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창원지청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김보미(Tel 055-239-65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시송달자 대상 명단

연번	사업장명	대표자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금액(원)	주소	고지서	서류의 주요내용
1	진**업	오*환	520602-1	123,570	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예용로 4*-*	독촉장 등	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및 압류예고
2	주식회사원***에프엔비	김*용	18011109600**	54,520	대구 달서구 구마로9* 10*동 50*호	독촉장 등	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및 압류예고